

대전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11879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19나11879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7가단70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수

피고, 항소인 C

변론 종결 2020. 11. 23.

판결 선고 2020. 12. 1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3. 선고 2017가단70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각 25,50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각 3,9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다. 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별도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3033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 ① 피고는 2017. 4. 6.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2017. 5. 8. 답변서, 2018. 3. 21.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 ② 피고는 2018. 3. 28.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다.
- ③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에 따라(장모 위증을 이유로 함) 제3차 변론기일(2018. 5. 30.)을 변경하고 추정하였으나, 곧바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다(위 연기신청 당시 이미 장모 사망, 피고의 고의 재판지연을 이유로 함). 이에 제1심 법원은 2018. 8. 22.을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의 폐문부재로 결국 발송송달하였다.
- ④ 피고는 2019. 4. 24. 원고들의 2019. 4. 17.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았고, 그 외 제1심의 변론기일의 통지 및 원고들 준비서면의 송달은 피고의 폐문부재로 발송송달 되었다.
- ⑤ 제1심 법원은 2019. 7. 3. 변론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역시 피고의 폐문부재로 발송송달 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의 폐문부재 이후 2019. 8. 28. 공시송달 되었다.
- ⑥ 피고는 2019. 11.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다. 피고의 주소는 제1심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변동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에게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비록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신영희

판사유석철

판사신혜영